

■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-26호

「보험업감독규정」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2015년 7월 14일

금융위원회

1. 개정사유

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(14.8월) 후속조치 및 금융개혁을 위한 현장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함

2. 주요 개정내용

가. 대출금리 산출기준 관련 금감원 위임근거 마련(안 제3-3조제2항)

대출금리 산출기준 마련을 위한 모범규준의 세부 내용을 금감원이 제시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

나. 시장성 있는 선급비용의 보험금 지급여력 인정(안 제7-1조)

선급비용 중 토지사용권 등은 거래를 통해 잔존 비용의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지급여력의 가용자본에 포함

다. 무해약·저해약 보험상품 활성화(안 제4-35조의2제1항, 제7-55조, 제7-66조제4항)

보험금은 동일하나 해지환급금을 낮게 설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춘 보험상품 출시를 유도

라. 변액보험 최저보증 의무 완화(안 제7-60조)

변액보험에서 최저연금액 보증여부(납입한 보험료 등)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

마. 임직원 소액대출 제도 합리화(안 제3-3조제2항, 제5-8조제1항)

보험회사 임직원대출에 대해 대출조건(금리)을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

3. 세부개정내용

□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'최근 제·개정 법규 정보'를 참조

○ 금융위원회(www.fsc.go.kr) → 법령정보 → 최근 제·개정 법규 정보